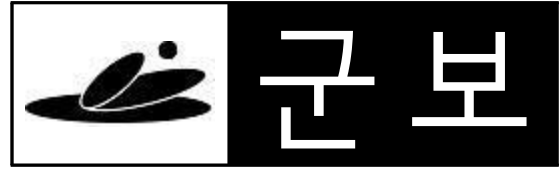


# 예산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39호 2021. 11. 8.(월)

## 고 시

- 예산군 고시 제2021-217호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1-1930호 :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예산군 공고 제2021-1951호 :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7
- 예산군 공고 제2021-1952호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7

회									
람									

예산군 고시 제2021-217호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예산군 고시 제2019-191호(2019.12.30.) 및 제2021-88호(2021.4.30.)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예산군수

###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지역

번호	구분	위치	면적(㎡)	비고
1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응봉면 후사리 산73번지 외 99필지	130,025	
2	예산 대회리 도시개발구역 해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예산읍 대회리 235-19번지 일원	86,498	

###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일 : 2021년 11월 15일

### 3. 해제사유

개발행위를 제한한 사유가 소멸되고 지정기한이 만료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

### 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예산군청 도시재생과에 지형도면을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도시재생과(☎041-339-7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공고 제2021 - 1930호

##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1.1.12. 전부개정, '22.1.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함

### 3. 주요내용

가. 소속공무원의 정의에 '의회사무과' 삭제(안 제2조제1호)

나. 조례의 적용범위에 '군의원' 삭제(안 제3조제3항)

다. 예산군의회와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의 통합운영 근거 신설(안 제16조)

####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15.(월)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총무과 서무팀(☎ 041-339-7212, fax 041-339-72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21. 11. 8.(월) ~ 2021. 11. 15.(월)

나.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할 곳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총무과 서무팀(우편번호 32435)

붙임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예산군 조례 제 호

##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읍·면 및 의회사무과”를 “읍·면”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군의회 의원 및 군”을 “군”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예산군의회와 통합 운영) 군수는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과 협의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 등(군의원 및 의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소속 공무원”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 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p> <p>2.·3.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 읍·면----- -----.</p> <p>2.·3.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 범위) ①·② (생략)</p> <p>③ 군수는 <u>군의회의원</u> 및 <u>군에 근무하는 사람</u>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p>	<p>제3조(적용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군----- ----- ----- ----- -----.</p>
<p>&lt;신 설&gt;</p>	<p>제16조(예산군의회와 통합 운영) <u>군수는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과 협의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 등(군의원 및 의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u></p>

예산군 공고 제2021-1951호

##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22.1.13.시행)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다. 의견제출 제외 대상(안 제4조)

라. 의견제출 방법(안 제5조)

마.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안 제6조)

바. 의견제출 검토(안 제7조)

- 규칙의견검토위원회 설치(조례규칙심의회에서 기능 대행)

- 제출된 의견에 대한 규칙을 소관하는 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사. 의견의 반영(안 제8조)

아. 차별대우의 금지(안 제9조)

자. 비밀 준수의 의무 등(안 제10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1. 11. 8. ~ 11. 15.(7일간)

###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총무과(참조 : 새마을규제개혁팀 ☎ 041-339-7232, FAX : 041-339-72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편발송 : (우편번호 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총무과 새마을규제개혁팀

- 전자메일 : moutons@korea.kr

- 기타 문의 관련 : ☎(041)339-7232, fax : (041)339-7209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예산군 조례 제 호**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예산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된 해당 규칙을 소관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검토의견서

의견제출인	성명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제출일자	
제출의견	규칙명 [ ] 제정 [ ] 개정 [ ] 폐지	
소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검토자 성명 (부서장) (팀장) (담당자)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참고】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1.4.20. 전부개정 '22.1.13. 시행)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예산군 공고 제2021-1952호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1.1.12. 전부개정, '22.1.13. 시행)됨에 따라 인 용조문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능률 성을 확보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이 표에서 법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을 말함

구분	개정 대상 조례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개정		
		현행	개정안	
안 제1조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법 제33조제1항	법 제40조제1항
안 제2조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1조	법 제66조의3	법 제78조
		제7조제3항	법 시행령 제28조	법 시행령 제31조
		제7조제4항	법 제15조	법 제19조
안 제3조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제1항	법 제142조	법 제159조
안 제4조	예산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	법 제16조	법 제21조
		제2조	법 제16조 / 19세	법 제21조 / 18세
안 제5조	예산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	법 제6조	법 제9조
안 제6조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	법 제4조의2제2항	법 제7조제2항
안 제7조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제1조	법 제4조의2제5항	법 제7조제6항
안 제8조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	법 제4조의2제4항/ 법 시행령 제81조	법 제7조제4항/ 법 시행령 제83조
안 제9조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제4조제3호	법 제4조의2제4항	법 제7조제4항
안 제10조	예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1호	법 제90조	법 제102조
안 제11조	예산군 사무위임 조례 (지방자치법 제103조 관련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1조	법 제104조	법 제117조
		제2조제1항	※ 조례 제2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로 개정	
		제2조제2항	※ 조례 제2조제2항 삭제	
		제4조	※ 조례 제4조 중 "의회사무과장" 삭제	
		제5조	※ 조례 제5조 중 "의회사무과장" 삭제	
		제6조	※ 조례 제6조 중 "의회사무과장" 삭제	
		별표 1	※ 조례 "별표 1"의 명칭을 "별표"로 함	

구분	개정 대상 조례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개정	
			현행	개정안
		별표 2	※ 조례 별표 2 삭제	
안 제12조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법 제66조제1항	법 제76조제1항
안 제13조	예산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법 제26조제6항	법 제32조제6항
안 제14조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법 제8조 법시행령제8조	법 제12조 법시행령제10조
안 제15조	예산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1조	법 제12조	법 제16조
안 제16조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법 제134조제3항/ 법시행령 제83조	삭제/ 법시행령 제85조
		제3조	법 제64조	법 제73조
		제9조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안 제17조	예산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법 제117조	법 제141조
안 제18조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조	법 제136조/ 법 제139조제1항	법 제152조/ 법 제156조제1항
안 제19조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법 제136조	법 제152조
안 제20조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법 제136조	법 제152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1. 11. 8. ~ 11. 15.(7일간)

##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총무과(참조 : 새마을규제개혁팀 ☎ 041-339-7232, FAX : 041-339-72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편발송 : (우편번호 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총무과 새마을규제개혁팀
- 전자메일 : moutons@korea.kr
- 기타 문의 관련 : ☎(041)339-7232, fax : (041)339-7209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예산군 조례 제 호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 례안

제1조(「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제3조(「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4조(「예산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의 규정”을 “제21조”로 한다.

제2조 중 “제16조의 규정”을 “제21조”로, “19세”를 “18세”로 한다.

제5조(「예산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6조”를 “「지방자치법」 제9조”로 한다.

제6조(「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예산군 반 설치 조례」의 개정)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8조(「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을 “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로 한다.

제9조(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 「예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90조의 규정”을 “제102조”로 한다.

제11조( 「예산군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예산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4조의 규정”을 “제117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 중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을 “읍·면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을 “읍·면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을 “읍·면장”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제12조(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예산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의회”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로,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로 한다.

제14조(「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예산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의 개정) 예산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조”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

제16조(「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5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73조”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예산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산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17조의 규정”을 “제141조”로 한다.

제18조(「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를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로 한다.

제19조(「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제136조의 규정”을 “제152조”로 한다.

제20조(「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조의5와 「지방자치법」 제136조”를 “제8조의5와 「지방자치법」 제52조에”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조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② (생략)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8조----- ----- ----- ----- ----- ----- ----- ----- -----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p>「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예산군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p>	<p>「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p> <p>-----.</p> <p>④ 「지방자치법」 제19조-----</p> <p>-----</p> <p>-----.</p> <p>-----.</p>
---	--

제3조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2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①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하 “경영안정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12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① 「지방자치법」 제159조-----</p> <p>-----</p> <p>-----</p> <p>-----</p> <p>-----.</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제4조 「예산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21조----- ----- ----- -----.</p>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p>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 제21조----- ----- ----- 18세 ----- ----- -----.</p>

제5조 「예산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예산군청과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 ----- ----- -----.</p>

제6조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p>	<p>제1조(목적) ----- ----- 제7조제2항-----</p>

에 따라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7조 「예산군 반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 -----.

## 제8조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 -----.

## 제9조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



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  
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  
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  
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  
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리의 구  
역변경과 폐치·분합
4. ~ 7. (생략)

-----  
-----  
-----  
-----.

1. 2. (현행과 같음)
3. ----- 제7조제4항--  
-----  
-----
4. ~ 7. (현행과 같음)

제10조 「예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법 제 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 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 는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 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 ----- ----- ----- ----- -----.
1. 「지방자치법」 제90조의 규 정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기구 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 우	1.----- 제102조----- ----- -----

2. (생략) ②·③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11조 「예산군 사무위임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117조----- ----- ----- ----- ----- ----- -----.
제2조(위임사항) ①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u>별표 1</u> 와 같다. ② <u>군수의 권한 중 군의회 사무과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u>	제2조(위임사항) ①----- ----- -- <u>별표</u> -----. <u>&lt;삭 제&gt;</u>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span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권한의 위임을 받아</span> 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 ----- 읍·면장----- ----- <span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권한의 위임을 받아</span> -----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 결하게 할 수 없다.

제6조(보고)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이 이 조례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면 그 내용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별표 2]

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의회사무분야>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군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 -----  
-----  
-----  
-----  
-----.

제6조(보고) 읍·면장 -----  
-----  
-----  
-----.

[별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삭 제>

제12조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p>1. (생략)</p> <p>2. “발의자”란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법안을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p> <p>3.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 제76조제1항----- ----- -----.</p> <p>3. (현행과 같음)</p>
---	---

제13조 「예산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3조(조례) ① (생략)</p> <p>②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p>	<p>제3조(조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 ----- ----- ----- -----.</p>

제14조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2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①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중</p>	<p>제12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① 「지방자치법」 제159조-----</p>

<p>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하 “경영안정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 ④ (생략)</p>	<p>-----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

제15조 「예산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p> <p>2. ~ 6.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지방자치법」 제16조----- -----.</p> <p>2. ~ 6. (현행과 같음)</p>

제16조 「예산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 등</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5조----- ----- -----</p>

<p>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p>
<p>제3조(선임방법과 절차) ①·② (생략) 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선임방법과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지방자치법」 제73조----- -----.</p>
<p>④ (생략)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예산군수에게 제출하면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6조제3항 ----- ----- ----- ----- -----.</p>

제17조 「예산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설치와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p>	<p>제2조(설치와 관리) ① ----- ----- <u>제141조</u>----- -----</p>

<p>보상 임시 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생략)</p>	<p>----- -----.</p> <p>② (현행과 같음)</p>
--	---

제18조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예산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 ----- ----- -----.</p>

제19조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추모공원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152조----- ----- -----.</p>

제20조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및 <u>제8조의5와 「지방자치법」 제136조</u>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가 부담경감,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 등 농가의 영농편의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제8조의5와 「지방자치법」 제52조에</u> ----- ----- ----- ----- ----- -----.</p>



## 【참고】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1.4.20. 전부개정 '22.1.13. 시행)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감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제4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⑧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⑩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한 감사 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⑪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⑫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9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⑬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2항에 따른 조치 요구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8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52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안)」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결산안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

·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
-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5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 의 경우에는 7명 이상 2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6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